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1-499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

2022년 3월 1일 시행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육전문직원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신규임용 및 자격연수	2
제3장 전보	5
제4장 교육전문직원 임용	15
제5장 시·도간 전보	19
제6장 국립학교와의 교류	21
제7장 교원의 배정	23
부칙	25
[별표 1] 교사, 교(원)감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립 유치원 및 국·공립 초등학교원의 인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우리 도내 국·공립 유치원 교원, 초등 교원, 특수학교 교원(유·초등),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초등 교육전문직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7.6.30.>

제3조(방침) 본도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방침을 적용한다.

- 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인사관계 제법규에 의한다.
- ② 학교경영 및 교육 실적이 우수한 자는 우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인다.
- ③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하여 생활안정을 기한다.
- ④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성을 배제하여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 ⑤ 본도 초등교원 인사구역을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정 운영한다. 다만,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⑥ 인사계획에 따른 실무세칙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장 신규임용 및 자격연수

제4조(임용후보자명부)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는 선발 시험 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작성한다.

제5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 해 서열에서 우선 순위로 한다.

제6조(임용 순서) ① 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으로 임용한다.

②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복무를 위하여 임용연기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 후 서열에 구애없이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7조(임지 배치) 신규교사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배치한다.

① 현직교사 중 전보서열명부에 등재되어 대기 중인 사람이 있는 시·군에도 보충 예정인원의 20%까지는 신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경합이 될 경우에는 서열에 의한다.

③ 희망지, 생활근거지 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가급적 인근 지역에 배치한다.

④ 신규교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원로교사는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⑥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용은 시·군간 전보 발표 이후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8조(임용의 특례) ① 교대, 교원대 졸업성적과 채용시험성적이 각각 10% 이내인 사람(인원 계산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은 전보 서열 명부 등재자에 우선하여 전주, 군산, 익산시와 본인의 희망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 특수교사 임용 후보자를 일반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장애구분 모집에 의한 신규교사의 임지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제9조(승진 임용) ① 교(원)장, 교(원)감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한다. 다만, 승진 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7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사람과 자격증 선취득자 및 양성 중 30% 미만인 성은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우선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수 있으며, 3배수 적용 비율은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6.30.>

② 교(원)장 승진후보자명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감)승진후보자 임용 순위에 달한 자일지라도 국립학교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교(원)감으로 승진 임용할 경우, 현근무지 이외의 시·군으로 배치한다. 다만,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7.27., 2019.7.25.>

제10조 삭제

제1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승진 순위에 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법정 기간 동안 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② 승진 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교(원)장, 교(원)감 승진대상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장, 교(원)감 임용 및 임용제청에서 제외한다.

③ 상위 자격 소지자가 퇴직 및 의원면직 후 교사로 재임용 되었을 경우 5년 이내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④ 성범죄로 징계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1.17.>

⑤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상위자격을 취득한 유치원교사의 승진 임용은 해당년도 승진후보자 중 교육공무원 임용 후 상위자격을 취득한 유치원교사의 최저 교육경력(「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7.25.>

제11조의 2(자격연수) 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은 교(원)장,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25.>

② 교(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는 작성 기준일 현재 교(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1조의 3(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 ①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은 자격별로 별도 서열부를 작성한다.

② 자격연수 선발인원은 일반 교원과의 형평성 및 수급 사정을 고려, 일정 비율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3장 전보

제12조(전보 대상) 교(원)감 및 교사의 시·군간 전보는 동일교 근속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교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사람도 전보 희망할 수 있다.

- ① 전년도 전보서열부에 등재된 사람이 동일교 장기근속으로 관내 전보된 자는 1년
- ②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으로 관내 전보된 교사는 6개월,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으로 전보된 교감은 6개월
- ③ 도서·벽지 근무자는 1년
- ④ 삭제 <2016.6.30.>

제12조의 2(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교원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입요청은 정원의 5% 이내에서 단위 학교 만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주시 근무자는 전주시 지역근무경력 5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서열부 작성 및 유효기간) 교(원)감과 교사의 전보서열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① 별표 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근무지역 급지별 경력점, 근무학교 급지별 경력점, 우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6.30., 2019.7.25.>
- ② 전보서열 평정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많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③ 시·군간 전보 서열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매년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교사의 전보서열부는 3월 1일자 정기 인사에 한한다.

④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서열부는 남·여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관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신설 2017.6.30.>

제14조(전보 희망 시기) 교(원)감 및 교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전보 희망하고, 서열명부 등재자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또는 타시·도 전입자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교(원)감은 당해 시·군 서열명부 등재자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9월 1일자로 전보 희망할 수 있다.

제14조의 2(의원면직) 타시·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 합격으로 인한 의원면직은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6.30.>

제15조 삭제

제16조(경합지 순환전보) ① 전주시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원)감,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타 시·군으로 전보한다.

②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및 연고지를 참작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서열부를 작성한다.

③ 삭제

④ 제16조제①항에 의한 타 시·군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근속자의 희망과 서열을 고려하여 1년간 전보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16조(경합지 순환전보) ① 전주, 완주, 김제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원)감, 10년 이상 근속한 수석교사 및 교사(이하“장기근속자”라 한다)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

② 순환전보지역의 장기근속자 전보는 별표 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전주를 제외한 순환전보지역에서 부부가 주민등록상 전보일 기준으로 최근 9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사람(미혼인 경우에는 본인에 한정한다)은(이하“실거주자”라 한다) 장기근속자로 전보 시 현 근무지역을 제1희망하여 서열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순환전보지역의 장기근속자 전보유예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거주자가 제1희망지인 현 근무지로 전보되지 못할 경우 1년씩 2년까지 전보유예할 수 있다.
2. 전주시 장기근속자의 타시·군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근속자의 희망과 서열을 고려하여 1년간 전보유예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25.]

제17조(특수학교 교사,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순환전보) ①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전담교원 중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교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환 전보한다.

②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동일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일반학교로 전보한다.

③ 특수학교 근무자가 만기 이전에 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시·군의 일반학교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작성한 전보서열부에 의거 전보한다.

④ 특수학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전보한다.

제1순위: 특수교육 전담교원 중 특수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제2순위: 특수교육 전담교원 중 특수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오래 경과된 사람

제3순위: 삭제 <2019.7.25.>

⑤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중 동일 시·군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시·군으로 순환 전보한다. <개정 2017.6.30.>

⑥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초·중등 학교급간 동수 교류 전보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별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9.7.25.>

제17조의 2(특수학교 교원 근속기간)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전담교원 전보 시에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시·군의 관내 근속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 3(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의 전보는 교사 전보 기준을 준용하되, 수석교사 수급에 따른 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25.>

제18조 삭제 <2017.6.30.>

제19조(전보의 특례) 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요에 따라 별도 서열부를 작성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일반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립 특수학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교원 수급 계획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지역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주시로 전입할 경우에는 근속 제한 연수의 잔여기간만 근무한다.

③ 삭제 <2018.7.27.>

④ 폐교, 학급 감축, 정원 감축(과원 조정 포함)등의 사유로 부득이 관내·외 전보된 사람은 전보 전후 학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기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시·군간 전보서열부에 등재된 사람이 폐교, 학급 감축, 정원 감축(과원 조정 포함)등으로 관내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서열부 유효 기간(1년) 내에 시·군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⑤ 시·도간 교류 파견교사는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근무 기간은 동일 시·군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며, 타시·도 교환 근무자가 교환 전 근무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귀할 경우 복귀 전·후 경력을 별도로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⑥ 해외 파견자는 복귀 후 경력 산정에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을 파견 전 학교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복귀 시 수급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희망지에 배치할 수 있다.

⑦ 국내 파견교원(시·도간교류 파견교사 제외)의 파견기간은 동일 시·군(학교) 근무 경력에 포함한다. <개정 2014.11.17.>

⑧ 국내 파견교원이 복귀할 당시 파견 전 시·군이나 학교의 정원 관계로 타시·군 또는 타교로 복귀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후 파견 전에 근무하던 시·군이나 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

⑨ 삭제 <2017.6.30.>

⑩ 폐교 및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교원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 서열부를 작성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⑪ 휴직자가 휴직 전 근무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직할 경우 복직 전·후 경력을 별도로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⑫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1년 동안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으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주시 장기근속자는 제외하고, 혁신학교 만기근무자는 2년 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⑬ 혁신*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학교의 필요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5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재직교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주시 장기근속 교사는 제외한다. <신설 2015.7.21.>

⑭ 특수학교(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사로 임용된 사람을 우선 전보한다. <신설 2016.6.30.>

⑮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 장애인 교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제20조(체육특기교사 명부작성) ① 전국소년체전 및 동계체전 종목으로 도대회 1위 이상의 입상실적이 있는 교사, 또는 10년 이내에 동종목을 직접 지도한 학생(개인,단체)이 전국규모 대회에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교사는 체육특기교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체육특기교사 명부에 등재한다.

② 체육특기교사 명부는 매년 1월 말일 자로 작성한다.

제21조(체육특기교사 전보) ① 체육특기교사로 확정된 사람을 소년체전 및 동계체전 종목 육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입 시·군 교육장의 추천과 동의를 받아 일반교사의 전보 서열에 구애 없이 해당 시·군 또는 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체육특기교사로서 소년체전 및 동계체전 지정종목 육성을 위하여 전보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전보된 사람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학교에서 학생(개인·단체)을 지도하여 전국규모대회(5개팀 이상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경우, 5년간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체육특기교사로 우선 전보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입상 실적이 없을 때에는 전보 이전의 시·군으로 환원 전보한다. <개정 2019.7.25.>

④ 체육특기교사가 지정 종목을 지도하다가 지정 종목이 다른 학교로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보 서열 및 동일교 근속 년수에 구애받지 않고 지정 종목 육성교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입상실적이 있는 체육특기교사가 일반교사로 환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정원 조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희망 시·군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⑥ 체육특기교사가 일반교사로 환원되었을 경우 동일 시·군 근무 경력은 본래 근무하던 시·군이 아닐지라도 특기교사로 전보되기 전에 근무하던 시·군 경력과 합산할 수 있다.

제22조(교·원장 전보 대상) 교(원)장 전보 대상은 동일교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일교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사람도 전보 희망할 수 있다.

① 상위 급지에서 하위 급지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1년. 다만, 1,2급지는 3,4급지로 전보 <개정 2018.7.27., 2019.7.25.>

② 도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1년

- ③ 폐교 및 분교장 개편, 통·폐합으로 전보된 사람은 6개월
- ④ 시·군간 전보에서 경합이 되는 3시 및 완주군에 전보 희망자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 6개월
- ⑤ 군 소재지 중심학교에 신규교장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중심학교는 초등교원인사업무처리요령에 명기함
- ⑥ 삭제 <2014.11.17.>

제23조(교·원장 전보 희망) 교(원)장의 전보는 학교경영능력과 직무 수행능력 및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다만, 경합이 될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 ① 동일교 근무경력
- ② 동일시·군 근무경력
- ③ 학교소재 지역의 거리
- ④ 학교규모 및 교감 배치 여부

제24조(교·원장 순환전보) ① 동일교에 4년(도서·벽지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전보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예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 또는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
2. 정년 1년 이하인 사람 및 교장 중임자 중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3. 1년 이내에 통폐합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4. 경합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학교경영실적이 양호하고 본인이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사람

② 교(원)장으로 전주에서 4년 이상(공모교장 기간 포함) 근속한 사람은 전주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되 재전입할 수 없다. <개정 2018.7.27., 2019.7.25.>

③ 원장으로 동일 시·군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타시·군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삭제

제25조의 2(교·원장의 통·폐합학교 근무기간 합산)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폐교나 분교장 개편 등으로 부득이 전보된 사람은 통·폐합 전·후 학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6조(우대전보) 도서지역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교장은 우대전보할 수 있다.(다만, 어청도, 개야도, 비안도는 1년 이상)

제27조(근무여건 개선전보 및 긴급전보) ① 동일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원)장 중 학교경영실적이 부진한 교(원)장은 타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6호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전보한다.

1. 해당 연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감사 결과 인사조치가 권고된 사람
3. 직위해제 후 복직된 사람
4. 지역사회에서 특정 교육공무원을 기피하거나 불화가 있어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람
5.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

제28조(전보의 제한) ① 비경합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장 중 중징계 처분된 사람과 감사 결과 인사조치 통보된 사람의 상위 급지 전보는 1년간 제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학교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학급 감축 및 정원 감축(과원 조정 포함)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0.>

1. 순환전보 대상자가 아닌 전보 희망 교(원)장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장
2.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감
3.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

제4장 교육전문직원 임용

제29조(장학사·교육연구사 추천 기준)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추천 기준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 전형 계획에 의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선발 방법) ① 공개 전형으로 선발하되 공개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삭제

제32조(추가 선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연도 소요인원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한적인 추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선발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선발 인원) ① 선발인원은 매년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교감과 교사의 비율은 수급사정에 따라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34조(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임용후보자 명부는 성적순으로 작성하되 직급별, 남·여별, 초등교육전문직원, 유아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육전문직원의 수급 사정에 따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9.7.25.>

- 제36조(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 ① 임용후보자명부의 서열 순으로 임용 하되 임용 예정기관의 실정에 따라 임용 순위를 조절할 수 있다.
- ② 교육연구사 및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는 서열에 구애 없이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임용기간이 1년간 연장된 사람(합격년도가 빠른 자)은 다음해 임용 후보자명부 작성 시 선순위로 한다.

제37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추천 기준)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추천 기준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① 초등교육전문직원 추천 기준

1. 교육전문직원 경력 1년 이상인 교육지원청 장학사(관), 직속기관의 장학사, 교육연구사(관)
2. 교육개혁 추진(시·도평가 업무포함), 장학 기획업무 등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교원

② 유아교육전문직원 추천기준

초등교육전문직원 추천기준 해당자로서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
2. 유아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특수교육전문직원 추천기준

초등교육전문직원 추천기준 해당자로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추천자 중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41조(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①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 직위에 적격자를 선정 임용한다.

②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의 1~6호 해당자 중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육연구관 중 장학관으로 전직이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한다.

④ 장학관 중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한다.

⑤ 장학(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2조(교육장 임용) 교육장 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명할 수 있다.

제43조(교육전문직원의 전직)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원)감 또는 교(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으로서 동일기관에서 동등급 직위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전직 또는 전보한다. 다만, 인사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7.25.>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사람
2. 징계처분 받은 사람
3. 감사결과 인사조치 권고된 사람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5.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

제5장 시·도간 전보

제44조(시·도간 교류)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합이 될 경우 해당 시·도에서 별도의 기준 제시가 없을 때에는 1~2순위별로 전출 서열을 정한다.

1순위: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3년 이상 별거 교원
<개정 2017.6.30.>

2순위: 1순위를 제외한 희망 교원

각 순위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서열을 정한다.

순	대 상
1	-전출희망 시·도에 장애인(1급) 배우자 및 장애인(1급)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교원 -전출희망 시·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교원 -3자녀 이상 부양 별거교원 중 한 자녀가 19세 미만인 사람 ※ 직계 존·비속은 1대에 한하며, 존속은 부모, 비속은 미혼 자녀에 한함
2	별거 기간이 오래된 사람
3	본도 근속 교육경력이 많은 사람
4	교육 총경력이 많은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소점)
6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45조(전입자의 시·군 배치) 타시·도에서 전입된 사람은 희망 시·군의
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46조(타시·도 전보 서열명부 작성) 타시·도 전출 희망자의 전출서열
부는 매년 3월 1일자로 작성한다.

제6장 국립학교와의 교류

제47조(전출 대상) 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의 전출 대상 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2년제 교육대학, 4년제 대학교 및 5년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현직 중 졸업자)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1급 (정)교사 <개정 2017.6.30.>
3.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다만, 전주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주시 근속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
4. 도 대회 규모 이상의 연구 실적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5. 동일직위 근무기간 중 교육감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② 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전출 대상 교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18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6.30.>
3. 전주시 근무자는 시지역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사람

제48조(명부 작성) ① 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전출 희망자명부는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작성한다.

② 교사를 추천함에 있어 총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과별 특기자와

남·여별로 전출 추천 서열을 정할 수 있다. 교과별 특기자의 추천 서열은 기본 조건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1을 구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3항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 해당 교과 특기자로 인정되는 사람

2. 교육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6.30.>

③ 교사는 별표 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되, 근무지역 및 근무학교 급지별 경력점을 제외한 우대가산점(근무지역, 근무기간의 제한 없음)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전출 추천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이 적은 사람을 우선한다. <개정 2019.7.25.>

④ 교장, 교감의 국립학교 전출은 전입기관의 전입 요구 조건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추천한다.

제49조(추천 인원) 요청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되, 남·여별로 추천 서열을 정하는 경우에는 남·여별 전출 요청 인원의 3배수로 한다. 다만, 희망자 수가 요청 인원의 3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 2(교장, 교감 자격 소지자 교류) 국립학교에서 지명된 교장, 교감 자격 소지자는 1교에서 1명만 인사교류할 수 있다.

제50조(전입자 시·군 배치) ① 전주시의 전입조건에 합당하여 국립학교로 전출된 사람이거나 전주시 근무 중 전출된 자로 전주시 근무제한 연수에 미달한 사람은 전주시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근속제한연수의 잔여기간만 근무한다.

② 삭제 <2021.7.20.>

③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우리 도의 수급사정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1.7.20.>

제7장 교원의 배정

제51조(교원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정원을 산출하여 교육지원청 별로 배정한다. <개정 2017.6.30.>

제52조(교원의 배치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제4항(교직원의 구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전라북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원 배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6.30.>

제53조(보직교사의 임용) ① 초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명
3.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4명 이내
4. 18학급 이상 23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6명 이내
5. 24학급 이상 29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6. 30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0명 이내
7.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2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하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보직교사는 1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1급(정)교사가 없거나 1급(정)교사 중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임용할 수 있다.

④ 보직교사의 임용권은 전라북도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7.>

⑤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은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7.6.30.>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 ①항의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전담교원 중 장기근속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까지 초빙 및 공모제 교장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전보 또는 중임 임용된 경우 초빙 및 공모제기간을 전주, 군산, 익산 동지역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2009.11.2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②, ③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7.>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0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별표 I 의4, 가. 포상은 '최고 훈격 1회분에 한하며 근무 시·군이나 수상시기 제한 없음'을 '동일시·군, 동일직위 최근 10년'으로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
별표 I 의4, 거. 전산능력보유교원 가산점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부여하지 않는다.

부칙<2011.7.9.>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열부 작성 및 유효기간 경과조치) 제13조 ③항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원장 전보 대상 및 교·원장 순환 전보 경과조치) 제22조 ②항 및 제24조 ②항은 2012년 3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2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별표 I 의 4. 마. 교원기능장 가산점은 2016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까지만 적용한다.

부칙<2012.11.2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9조제3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교육전문직으로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 임용된 교육공무원 부터 적용한다.

③ 제49조의 2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칙 삭제) 부칙(2010. 11. 17.) 제2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중 포상에 관하여는 삭제한다.

부칙<2013.5.7., 2013.6.2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장의 적용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3조 ①항 1호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1.27.>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7.>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4조 ②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I> 4-카. 교과전담교사, 4-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우대가산점은 2015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7.21.>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30.>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전보 대상)은 2017년 3월 1일자 교(원)감 발령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6.30.>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27.>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순환전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3년 3월 1일 인사에는 전보일 기준, 13년 이상 근속한 교사
2. 2024년 3월 1일 인사에는 전보일 기준, 1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 2025년 3월 1일 인사에는 전보일 기준, 11년 이상 근속한 교사

제4조(실거주자에 관한 적용례) 실거주자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3년 3월 1일 인사에는 전보일 기준, 6년 이상 현 근무지에 연속하여 거주한 교원
2. 2024년 3월 1일 인사에는 전보일 기준, 7년 이상 현 근무지에 연속하여 거주한 교원
3. 2025년 3월 1일 인사에는 전보일 기준, 8년 이상 현 근무지에 연속하여 거주한 교원

제5조(근무학교급지별 경력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취득한 근무학교 급지별 경력점은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7.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취득한 우대 가산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교사, 교(원)감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1. 근무지역 급지별 경력점 <개정 2013.11.27.>

가. 동일 시·군, 동일 직위 최근 8년을 반영한다.

나. 평정기간은 평정일 기준, 지난 8년간의 근속 연수를 1기는 최근 2년간, 2기는 1기전 6년간으로 한다.

1) 제1기는 다음 지역 급지별 기준치에 따른다.

~ 2019.2.28.까지 근무경력			2019.3.1.~2020.2.29.까지 근무경력		
급지	지역명	1년 기준치	급지	지역명	1년 기준치
1	전주	10	1	전주	10
2	군산(가), 익산(가)	11	2	군산(나), 익산(나), 김제, 완주	11
3	군산(나), 익산(나), 김제, 완주	12	3	군산(가), 익산(가), 임실, 진안	12
4	임실, 정읍, 진안, 부안	13	4	정읍, 부안, 순창, 장수	13
5	남원, 고창, 순창, 장수	14	5	남원, 고창, 무주	14
6	무주	15	<개정 2018.7.27.>		

2020.3.1.부터 근무경력		
급지	지역명	1년 기준치
1	전주, 군산(나), 익산(나), 김제, 완주	11
2	군산(가), 익산(가), 임실, 진안	12
3	정읍, 부안, 순창, 장수	13
4	남원, 고창, 무주	14

< 개정 2019.7.25.>

※ 교(원)장의 급지전보에도 위 표의 급지를 적용함

2) 제2기는 1년에 5점씩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9.7.25.]

2. 근무학교 급지별 경력점 <개정 2019.7.25.>

가. 동일 시·군, 동일 직위, 최근 10년의 기간에 대해 부여한다.

구분	2020.2.29.까지 근무경력					2020.3.1.부터 근무경력				
	1	2	3	4	5	1	2	3	4	5
1년간 가산점	0.5	0.75	1.0	1.25	1.5	0.5	0.625	0.75	0.875	1

3. 삭제 <2017.6.30.>

4. 우대 가산점은 다음에 의한다.(동일직위, 동일시·군 최근 10년)
다만, 포상과 다자녀 양육교원 우대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가. 포상

(최고 훈격 1회분에 한하며 근무 시·군이나 수상시기 제한 없음)

훈 격 별	평정점
훈장 및 포장, 모범공무원, 모범교원 대상(교육감)	2.5
대통령 표창, 모범교원상(교육감)	2
국무총리 표창	1.5
장관표창	1
교육감표창, 총(학)장 표창	0.5
교육장표창	0.25

나. 연구실적(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등 급 규 모	전국 규모	시·도 규모
1	2	1
2	1.5	0.5
3	1	0.25

○ 인정범위 : 1년에 1종목 입상분만 인정

다. 연구학교 근무(교육지원청지정 이상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지원청지정: 1년에 0.25점, 도지정: 1년에 0.4점, 교육부지정: 1년에 0.5점
- ※ 도지정 시범유치원 원감(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
- ※ 교육지원청지정 시범유치원 원감 포함(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
- 도교육청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 1년에 0.4점(2005년 3월 1일 근무한 교원부터 적용). 다만, 유치원교사는 1년 1회에 0.2점, 2회 이상은 0.4점(201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라. 삭제

마. 삭제 <2018.7.27.>

바. 효행교원(1회에 한함)

- 시·군 단위이상 기관장의 효행상(표창) 수상자
- “가”항의 포상 훈격별 평정점의 10%를 가산한 점수 부여

사. 삭제

아. 학급담임 교감(법정 학급담임 교감)

- 1년에 1점 부여

자. 복식학급 담임교사(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에 0.25점
 - 적용 시기: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
- 삭제 <2021.7.20.>

차.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에 0.25점
- 적용 시기: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통합 학급은 2006년 3월 1일 담임한 교사부터 적용함)

카. 교과 전담교사(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에 0.25점 (월 0.021점), 삭제 <2018.7.27.>
※ 2019.2.28. 실적까지 인정

타. 영어 전보 가산점 <개정 2021.7.20.>

New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IBT)	전보 가산점
502 이상	930 이상	111 이상	0.75
392 이상	815 이상	95 이상	0.50
273 이상	635 이상	70 이상	0.25

※ 영어기능장과 중복사용 불가

파.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가산점

(가장 우수한 입상분 1회만 가산)

등 급	1	2	3
가산점	0.3	0.2	0.1

※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하. 삭제

거. 삭제

너. 장애인 부양 <개정 2019.7.25., 2021.7.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점 부여
 - 장애인 교원
 - 장애인 배우자를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인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 적용 시기: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

더. 삭제

러. 삭제

머. 체육 지도실적 우수교사

등위	감독교사			담임교사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전국규모 대회 및 동계체전	도단위 대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전국규모 대회 및 동계체전	도단위 대회
1	3	1.5	0.5	0.5	0.25	0.125
2	2	1	0.25	0.5	0.25	0.125
3	1.5	0.5	0.125	0.5	0.25	0.125

- 해당학교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지도실적에 한하며, 2회 이상의 지도실적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적용 시기: 2006년 지도 실적부터 인정하고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

버. 다자녀 양육 교원 <개정 2019.7.25.>

- 3자녀 이상 양육 교원 1점
- 2자녀 양육 교원 0.5점 <신설 2021.7.20.>

서. 파견교사(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에 0.5점(월 0.042점, 2008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어. 1학년, 6학년 담임교사 <개정 2018.7.27.>

- 1년에 0.25점(월 0.021점, 2011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1학년 담임교사는 2019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순회교사 <개정 2014.11.17.>

- 특수교육순회교사 1년에 0.75점(월 0.0625점)
- 전문상담순회교사 1년에 0.75점(월 0.0625점) <신설 2021.7.20.>

처. 발명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발명전담교사

- 1년에 0.25점(월 0.021점) <신설 2016.6.30.>
삭제 <2019.7.25.>

※ 2017.3.1.~2020.2.29. 실적까지 인정